

# 사회 기출해설 (B책형)

해설 - 전재홍 교수(종로공무원학원)

## [1번 정답] ④

### [정답 해설]

④ 국제형사재판소는 UN의 산하기구가 아니고 독립 상설재판소이다.

국제연합 산하 기구로는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경제 사회 이사회, 신탁 통치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오답 해설]

①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인 1920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국제 기구였다. 그러나 정작 제안자였던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1930년대 이후부터 계속되는 국제적인 분쟁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으며, 제2차 세계 대전을 억제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지리멸렬하다가 결국 모든 업무, 위임통치령, 자산 등을 국제 연합에 승계하면서 해체되었다.

## [2번 정답] ①

### [정답 해설]

이 문제는 실전에서는 ①을 먼저 답하기보다 ②③④가 틀리기 때문에 소거하고 ①을 답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정당별로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과 비례대표 선거의 득표율이 다른 것으로 볼 때 1인 2표제가 도입되어 있고, 비례대표 선거 방식은 정당명부식과 자유선택식이 있는데, 정당명부식(구속명부식)은 정당 투표만 가능하고 정당 명부안에 있는 후보자 선택은 하지 못한다(정당 선택만 가능). 한편 자유선택식(무명부식)은 정당을 선택한 후 정당명부 안에 있는 후보자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먼저 정당 선택 후 선택한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 그런데 문제 자료에서는 정당 선택 후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밖에 없다.(즉, ①번 지문이 무조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다.)

### [오답 해설]

② 다수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는 다수대표제이므로 지문 자체가 논리 모순이다. 또한 갑국은 “지역구는 254개 선거구에서 254석”라고 하였으므로 선거구 수와 지역구 의석수가 동일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선거에서 1위만 당선되므로 2위 이하는 사표가 발생한다. C당과 D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구에서는 A당과 B당 후보자가 2위 이하가 되었을 것이므로 A당과 B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었을 것이다.

④ 정당의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낮은 경우이면 정당이 얻은 표에 비해 더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었다는 것으로서 그 정당은 과소대표된 것이고, 정당의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높은 경우이면 정당이 얻은 표에 비해 더 적은 후보자가 당선되었다는 것으로서 그 정당은

과대대표된 것이다. C당 후보의 득표율은 6.0인데 의석률은 2.8이고, D당 후보의 득표율은 2.2인데 의석률은 1.6이므로 C당과 D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는 과소 대표되었다.

**[3번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공익(公益) 실현을 추구하는 B는 정당 또는 시민단체인데, (가)에서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합니까?”가 들어간다면 A가 정당이고, B는 시민단체, C는 이익집단이 된다. 따라서 “공익(公益)실현을 추구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익집단(C)은 “아니요”(㉠)로 답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이 있는데 C에서 “아니오”라고 하고 있으므로 (가)에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합니까?’가 들어갈 수 없다.
- ② ㉠이 ‘아니요’라면 A는 이익집단인데, 이익집단은 정권 획득과 무관하므로 틀리다.
- ④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모두 “예”로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C에서 “아니오”라고 답했으므로 틀리다.

**[4번 정답] ③**

**[해설]**

투표시간 연장,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사전 투표 제도 도입 등은 시민의 정치적 의사 반영 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된다.

**[5번 정답] ④**

**[정답 해설]**

게리맨더링은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불합리하게 재조정하는 것이다.

- ㄴ.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게리맨더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ㄷ.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제도화하면 (가)[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오답 해설]**

- ㄱ. 게리맨더링(가)의 방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하다.
- ㄷ.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선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가 1개(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이므로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재조정하는 게리맨더링이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게리맨더링이 나타날 수 있다.

**[6번 정답] ④**

**[정답 해설]**

ㄷ. 맞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9.1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 ㄹ. 맞다.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소가(訴價)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소액사건 심판제도**

**(1) 제도의 취지**

민사소송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가(訴價)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간편한 소송제기**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인쇄된 소액심판용 서식용지가 비치되어 있어 누구든지 이 서식용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제기가 가능하다.

**(3)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 ①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 ②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授權)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오답 해설]**

- ㄱ.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에 기재된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할 뿐이지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우편제도는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로서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구입 청약에 대한 철회를 하고 싶을 때 내용증명제도를 활용한다. 우편수취인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우편을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ㄴ.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소송 전이나 민사소송 중간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민사소송과 민사조정은 별개의 제도이고, 민사소송의 전심절차는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민사조정을 먼저 거칠 필요가 없다.

**\* 민사조정제도**

**(1) 제도의 개념 및 취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민사조정신청**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된다.

**(3) 민사조정절차**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 다만,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

위원회에서 처리하기도 한다.

**(5) 소송으로의 이행**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 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된다. **[민사소송의 전심절차는 아니다.]**

**(6) 조정의 효력과 집행**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지만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위 조정 또는 결정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또한, 채무의 내용이 금전채무인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거나 일정한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7번 정답] ②**

**[해설]**

박스 지문의 내용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갑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책임 조각 사유로는 강요된 행위, 형사미성년자의 행위, 심신상실자의 행위 등이 있다.

**[8번 정답] ②**

**[정답 해설]**

소거법을 이용해 풀어보자. 먼저 ㄷ이 틀렸으므로 지문 ① ㄱ, ㄴ 과 ② ㄱ, ㄴ 이 남는다.

ㄱ은 ①과 ②의 공통이므로 ㄴ과 ㄴ중에서 맞는 지문을 찾아야 한다.

ㄴ은 사회 수준에서는 매우 어려운 지문이고, 상식적으로 접근해보면 ㄴ.(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이 맞다고 생각될 것이다. [소비자 기본법에 있지만 어려운 지문이다.]

ㄱ. 맞다.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ㄴ. 맞다. **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②항:**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오답 해설]**

ㄴ. 틀리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ㄷ. 제조물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틀리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 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 1. 고의성의 정도
-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 2(결함 등의 추정) [본조신설 2017.4.18.]**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4조(면책사유)**

-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9번 정답] ①**

**[정답 해설]**

- ㄱ. 민법상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 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금고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 2014.11.29.]

**[오답 해설]**

- ㄴ. 지문 자체가 논리 모순이다. 명예훼손의 주체가 사인(私人)이므로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하므로 “지방법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틀린 지문이다.
- ㄷ. 틀리다. 언론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없고, 언론중재위원회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0번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 민법상 책임능력자는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는 자’이고 책임 능력 여부는 형법과 달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지만, 판례는 대체로 14세부터는 책임능력자, 12세 이하의 책임 무능력자, 13세는 책임능력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 문제에서 고등학생 같은 만 17세이므로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된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판례] 13세 5개월 정도된 아이의 책임능력**

13세 5개월 남짓한 나이 어린 미성년자로서 상당히 위험한 고무줄 새총을 피해자에게 발사하여 실명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행위당시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인 자이고 갑은 만 17세인 형사 성년자로서 형벌 부과 대상자이다.
- ② 갑은 을과 병에게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갑이 만 17세로서 책임능력자라면 갑의 부모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갑의 친권자로서 친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는 있다.

**[11번 정답] ④**

**[정답 해설]**

종속이론은 중남미의 상황을 서구에의 종속에 의한 저발전 상태로 파악하였다. 자본주의 세계 체제는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부 국가는 중심부 국가에 종속되어 발전의 바탕인 잉여 생산물을 수탈당하므로 발전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저발전 상태에 놓여있다는 이론이다. [주의: 아직 발전을 하지 않은 상태인 미발전과는 다른 개념이다.]

**[오답 해설]**

- ① 사회진화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근대화론은 사회가 야만 → 미개 → 문명이라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고 본다.
- ② 근대화론은 서구 중심적이고 기능론적인 보수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 ③ 세계 체제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성되며, 중심부인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인 주변부를 종속시키면서 수탈하며 발전하고, 때문에 제3세계는 빈곤과 저발전의 악순환을 거듭한다고 본다.

**[12번 정답] ④**

**[정답 해설]**

A국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상층:16, 중층:31, 하층:53)이고, 자식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상층:17, 중층:58, 하층:25)로서, 다이아몬드형인 자식 세대의 계층 구조가 더 안정적이다.

**[오답 해설]**

- ① 부모와 자식 간 계층 비율이 다른 것으로 보아 계층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A국은 개방적 계층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 ② 자식 세대는 다이아몬드형의 안정적인 계층 구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말은 틀리다.

③ 계층 간 상승 이동은 32(1+3+28의 합), 계층 간 하강 이동은 5(2+1+2의 합)로서 상승 이동에 비하여 하강 이동의 비율이 더 낮다.

[13번 정답] ②

[정답 해설] ~~㉠㉡㉢㉣~~ 삭제 할 것

실증적 연구방법에 기초한 실험연구법을 묻는 문제이다. 따라서 가설(㉠)의 경험적 검증을 위해서는 계량화된 자료의 획득이 중요하다.

[오답 해설]

① 사기 진작 프로그램(㉠)은 독립 변수이고, 직무 만족도(㉡)가 종속 변수이다.

③ 사기 진작 프로그램의 처치를 한 A집단이 실험 집단이다.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B집단은 통제 집단이다.

④ 사기 진작 프로그램의 시행이 직무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시험 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1차 측정 결과(사전 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가 없어야 하고, 2차 측정 결과(사후 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나야 한다.

[14번 정답] ②

[정답 해설]

제시문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 사회실재론의 관점이다.

사회 실재론은 사회구조의 영향을 강조하므로,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답 해설]

①③④는 사회 명목론의 한계에 해당한다.

[15번 정답] ③

[정답 해설]

ㄴ, ㄹ은 관료제의 특성에 해당하는 맞는 지문이다.

[오답 해설]

ㄱ. 관료제는 공식 조직을 중시한다.

ㄷ. 관료제는 개인별 분업과 전문화를 특징으로 하므로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탈관료제에 비해 분명하다.

[16번 정답] ②

[정답 해설]

(가)는 완전경쟁시장, (나)는 독점적 경쟁시장, (다)는 독점시장, (라)는 과점시장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경우 개별 기업은 제품 차별화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므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쳐 단기에 다소 높은 가격(독점 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진입장벽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독점 이익이 사라진다.

반면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순응자로서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주어진 시장가격에서 생산량만을 조절한다.

[오답 해설]

① 완전경쟁시장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③ 독점시장은 시장에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므로 하나의 재화만 생산한다고 가정하므로 대체재가 될 수 있는 재화가 없다. 대체재가 없이 하나의 재화만 생산한다는 점에서는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하다.
- ④ 과점시장에서는 소수기업 간에 담합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소수 기업이 담합을 하게 되면 마치 독점기업이 행동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17번 정답] ③

**[정답 해설]**

(가)는 주식이나 채권으로 대표되는 직접금융시장, (나)는 은행으로 대표되는 간접금융시장이다.

③ 직접금융시장(가)에 비해 간접금융시장(나)에서의 금융상품이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더 높다.

금융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은행으로 대표되는 **간접금융**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대표되는 **직접 금융**이다. 간접 금융과 직접 금융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투자나 대부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예금자들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서 그 돈을 은행이 대출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정확히 누가 그 돈을 빌려가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대출과 관련된 결정은 예금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이 잘못된 대출결정을 해서 손해를 보고 심한 경우 은행이 도산하더라도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예금보험제도를 운용한다. 이에 비해 직접 금융인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이들 금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고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거나 부도를 낼 경우, 그 손해를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 금융은 간접금융에 비해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간접 금융에 해당하는 은행 예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낮은 이자율로도 많은 사람들의 예금을 모을 수가 있다. 또 동일한 이유로 직접 금융시장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모가 작고 사업연수가 짧은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기가 어렵고 발행하더라도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정기적금은 은행으로 대표되는 간접금융시장(나)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이다.
- ② 직접금융시장(가)에서는 자금 공급자가 자금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전액 부담한다.
- ④ 간접금융시장(나)에 비해 직접금융시장(가)에서 자금 공급자의 자금이 어느 기업으로 투자되었는지 알기 쉽다.

[18번 정답] ①

[해설]



첫째, 이자율을 인하하면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하므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 **⊕ 자산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 투자는 증가하고 가계 소비는 증가하므로 **⊖ 총수요가 증가**한다.

둘째, 이자율을 인하하면 국내 자금 유입이 줄어들어 외화공급 감소로 외화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므로 환율이 인상된다. 환율 인상으로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므로 **⊖ 순수출은 증가**하고 순수출 증가는 **⊖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19번 정답] ④

2017년 A국의 경상수지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수지	상품수지	A국 기업의 상품 수출 20억 달러	+20억	-10억	총계 +40억
		D국 기업으로부터 원자재 수입 30억 달러	-30억		
	서비스수지	A국 기업이 사용한 해외 저작권 사용료 50억 달러 지급	-50억	+100억	
		B국 국민이 A국 여행에 150억 달러 지출	+150억		
	본원소득수지	A국 국민의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배당 소득 50억 달러 수취	+50억	+50억	
	이전소득수지	C국의 지진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 비용 100억 달러 지원	-100억	-100억	

[정답 해설]

④는 맞다. 국제수지표는 경상수지, 자본·금융계정과 오차 및 누락을 합하면 항상 0이 되도록 작성된다. 오차 및 누락항목을 무시한다면 국제수지표에서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의 합계가 항상 0이 되어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2016년 경상수지가 0이고 자본·금융 계정도 0'이었으므로, 2017년 A국의 경상수지가 +40억달러라면 자본·금융계정은 -40억 달러가 되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서비스 수지는 +100억달러로 양(+) 값을 갖는다.
- ② 본원 소득 수지(+50억달러)와 이전 소득 수지(-100억달러)의 합은 -50억달러이다.
- ③ 2016년 상품 수지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2016년 대비 2017년 상품수지의 증감은 알 수 없다.

**[20번 정답] ①**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각각 200개씩 증가한 이후의 수요공급표는 다음과 같다.

재화(개)		가격(원)				
		80	90	100	110	120
X재	수요량	1000	900	800	<b>700</b>	600
	공급량	400	500	600	<b>700</b>	800
Y재	수요량	1000	900	800	700	<b>600</b>
	공급량	600	600	600	600	<b>600</b>

**[정답 해설]**

① 두 재화의 수요량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 각각 200개 증가한 이후 X재의 균형 가격은 110원이고, Y재의 균형 가격은 120원이므로 맞다.

**[오답 해설]**

- ② 수요량이 각각 200개 증가한 이후 X재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 반면, Y재의 균형 거래량은 그대로이다.
- ③ X재의 판매수입(110원×700개)은 77000원이고, Y재의 판매수입(120원×600개)은 72000원 이므로 X재의 판매수입이 Y재의 판매수입보다 5000원 더 많다.
- ④ 재화의 균형 가격 상승률과 판매 수입 증가율이 동일하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표를 보면 X재와 Y재의 경우 모두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있으므로 틀리다.